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)

나.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(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2023/5/2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2022년 10월 6일 발표한 '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'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기준 제정·관리(제6조 제4항)

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은 감독기관(금감원)이 제정하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 명확화

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(별표 7)

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,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

• 회사가 중요한 취약 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

□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수준 완화(제26조, 별표 8)

—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최종 부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

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·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 시 반영

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(별표 9)

—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회사,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%를 감경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를 '경미'로 양정

□ 제재 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(제38조, 제39조)

-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, 제재 투명성·공정성 제고,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상에 포함 등

나.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(2023/5/2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'(2022. 10. 6.)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(별표 제2호)

-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,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

[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]

(단위: 천원)

구분	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	포상금 기준금액
1등급	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	1,000,000
2등급	고의Ⅲ~Ⅴ단계 조치 (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500,000
3등급	중과실Ⅰ~Ⅴ단계 조치 (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300,000
4등급	과실Ⅰ~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(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)	30,000

□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(별표 제3호)

-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·단순화

□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·의결 근거 명확화(제8조)

- 증선위의 포상 심의·의결 대상에 금감원장(경고 또는 주의)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